

문서번호	건축과-4754
결재일자	2015.2.24.
공개여부	부분공개(6)

주무관	재건축담당	건축과장	도시환경국장	부구청장	
나대현	이원재	임철수	김장수	02/24 김병환	
협 조					

**“정릉3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관련”  
사용비용 보조금 지급**

2015. 2.

**도시환경국  
건축과**

# “정릉3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관련”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

우리구 정릉동 289-16일대 『정릉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』 해산에 따라 해산추진위원회로부터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이 있어, 『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』을 근거로 검증위원회 검증 후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.

## I 관련 근거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 2(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)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7조의 3(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)
-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15조의4 ~ 제15조의6
-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(서고시 제2013-305호)

## II 신청 개요

- 대 상 : 정릉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(대표자 : 박명헌)
- 신 청 자 : 박명헌
- 신 청 일 : 2014.04.04
- 신청금액 : 1,246,816,459원

업무항목	외주용역비	회의비	인건비	운영비
금액(원)	828,886,000	21,738,570	244,508,720	151,683,169

### Ⅲ

## 추진경위

- 2007.02.28 : 추진위원회 승인
- 2013.10.07 :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(주민 해산동의서 제출 50.83%)
- 2014.04.04 :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신청
- 2014.11.25 :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(1차)
- 2014.12.02 :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(2차)
- 2014.12.30 :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통보
- 2015.01.22 :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신청
- 2015.01.29. ~ 2. 12 :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

### Ⅳ

## 검증위원회 검증결과

구 분	신청금액	검증위원회 결정금액	비고
외주용역비	828,886,000	562,739,340	
회의비	21,738,570	0	
인건비	244,508,720	221,800,950	
운영비	151,683,169	100,112,170	
합계	1,246,816,459	884,652,460	결정금액
비율	100%	70.95%	
보조금액		619,000,000	결정금액의 70%

### Ⅴ

## 향 후 계 획

-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(보조금액 : 619,000,000원)
-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른 지급 미이행 및 결과보고(6개월이내) 없을시 회수조치  
끝.